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76
----------	-------

발의연월일 : 2026. 4. 13.

발 의 자 : 김은혜 · 김승수 · 이종욱  
정성국 · 최수진 · 김선교  
김기현 · 김미애 · 김정재  
조배숙 · 강대식 · 이양수  
엄태영 · 조승환 · 배준영  
서범수 · 김상훈 · 이종배  
박정하 · 김재섭 · 안상훈  
의원(21인)

찬 성 자 : 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한편,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 경감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유가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었고, 항공업계가 전반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위기는 항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

고 항공산업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기업의 규모 및 취득일로부터 기간과 관계없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항공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항공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본문 중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를 “재산세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재산세는 면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